

## 2020년 제7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 회의 개요

- 일시: 2020. 11. 2.(월) 15:00~16:00
- 장소: 공사 14층 대회의실小
- 참석위원
  - 문영기, 이창배, 강기연, 심혜진, 전진한
  - ※ 배석: 배병찬, 이태연, 손민정, 국혜디, 정민주, 신동길, 박지현
- 상정안건
  - (의안번호 2020-18)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의안번호 2020-19) 정보 비공개 결정 7건에 대한 직권심의
- 회의결과
  - 의안번호 2020-18: 부분인용
  - 의안번호 2020-19: 비공개 5건, 부분공개 1건, 공개 1건 결정

### □ 성원보고

- 재적인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회의 성원이 되었음. (간사)

### <의안번호 2020-18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 위원 발언 내용

- [7163478] 전사전략목표 및 부서성과목표 등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자료 일체(19~20년 2개년치) 등 - 경영관리부

#### <○○○ 대리>

- 청구인이 요청한 조직성과관리 관련 자료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급 및

승진 등 임직원 인사관리에 활용되는 자료이며, 정부 및 서울시 정책기준에 따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우리공사의 전략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등이 내재화 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청구인의 청구의도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지?

<○○○○ 대리>

- 유선연락을 따로 취하지는 않았으나,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자료가 아닌 공사의 성과관리 지표, 실적, 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 세부자료를 요청하였기에 비공개 처리하고자 함.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호에 따라 기각(비공개) 결정함.

### <의안번호 2020-19 정보 비공개 결정 7건에 대한 직권심의>

- [6946271] SH공사-마포구 간 복합화사업 양해각서, SH가 계획하고 있는 마포구 내 복합화 사업 계획안 - 산업경제사업부

<○○○○ 과장>

- 최초 청구인이 요청한 SH공사-마포구 간 복합화사업 양해각서 및 마포구 내 복합화 사업 계획안은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협의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공개 시 정보취득 여부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7,8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추후 사업계획안은 비공개하더라도 양해각서는 공개해달라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를 제외한 양해각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로 부서자체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함.

<○○○ 위원장>

- 부서의 결정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8호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함.

- [7025953]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규정(안)
- [7051842]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규정 - 주택정비사업  
부

<○○○ 주임>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규정(안)은 2020. 7. 17.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가결된 내용이며, 동 시행규정(안) 부칙1항에 근거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재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본 시행규정이 시행되지 않아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공개할 예정인지?

<○○○ 주임>

- 12~1월 중에 해당 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인가를 받으면 공개할 예정임.

<○○○ 위원>

- 해당 시행규정(안)을 만들 때, 조합원 등에게 의견을 구하는지?

<○○○ 주임>

- 약정 상 주민들과 협의 완료된 사항임.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7100862] 채무자 주소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타 채권자의 압류 금액 공개요청 - 강동센터

<○○○ 계장>

- 청구인은 특정 임차인(채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타 채권자의 압류금액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제한을 받지 않은 단계의 채권자(제3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채무관계, 즉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해당 임차인은 퇴거한 세대인건지?

<○○○ 계장>

- 맞음. 퇴거 이후에 발생한 소송 건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주소지가 우리 공사 임대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어 우리공사로 청구서가 접수된 것이며 해당 소송과 우리 공사는 관련 없음.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7105303] 향동지구 6단지 시공사 우남건설과 서울특별시 SH공사 간 맺은 소음관련 협약서 - 도시환경부

<○○○ 과장>

- 해당 협약서는 우리공사와 (주)우남건설 간 공동주택 6블록 소음저감방안의 협의내용 변경 추진 및 그에 따른 민원해소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 체결한 협약으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5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민원의 원인자인 (주)우남건설에서 해당 민원 해결 전 까지 외부 유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판단되고,

- 제9조1항7호에 따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협약서 제11조2항 참조)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SH의 자체적인 비공개 결정보다는 제3자 의견 요청을 통해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청구인에게 우남건설의 의견 또한 고지해주는 것이 맞음.

<○○○○ 과장>

- 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비공개 결정 이후 우남건설에게서 비공개 요청관련 공문을 수령한 바 있음.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7121683]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10년간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하종합건설, 원하코퍼레이션 등 수주받은 공사내역 일체 - 계약부

<○○○○ 사원>

-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해당 공사내역 일체는 개인식별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한 경우 조달청을 통해 관련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역이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 맞는지?

<○○○○ 사원>

- 공개됨.

<○○○ 위원>

- 일반시민의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 및 검색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공개청구한 것으로 보임. 공개되어있는 정보라면 비공개 처리할 필요 없음.

<○○○ 위원장>

- 사전 공개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이므로 공개 결정함.

- [7147185] 고덕강일지구 아파트 4단지 추정건설원가 산정 보고 문서
  - 예산자금부

<○○○ 과장>

- 해당 정보는 우리 공사에서 분양 공급(2019년 8월)한 고덕강일지구 아파트 4단지의 분양가격 결정 시점(2019년 7월)에 공사 준공(2020년 7월) 시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정하여 산정한 금액 정보임. 해당 추정건설원가는 확정 사업비가 아니며, 분양가격 결정 당시 추정되는 원가 등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우리 공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최근 SH에서 건설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 과장>

- 2020년에 준공된 아파트부터 건설원가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청구인은 건설원가를 추정하기 위해 만든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는 확정사항이 아니기에 공개하기 어려움.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